

## 충청북도학설치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 제안이유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충북학사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학사운영 수탁 법인인 재단법인 충북학사 정관 및 제규정은 제정 되었으나 설치 주체인 도는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의 설치 근거 및 운영 방안과 지도감독의 근거를 마련코자 함.

### 주요골자

- 학사설치의 목적, 위치, 기능을 규정
- 학사 운영을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위탁 운영
- 학사 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비용을 도비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학사시설을 목적외 사용하는 등의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학사 운영 상황을 도지사가 검사 또는 감독할 수 있도록 함.

### 제정근거

지방자치법 제15조

### 예산상황 : 해당없음

### 기타참고 자료 : 별첨

- 지방자치법 제15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 제41조

## 충청북도학사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충청북도 학사(이하 “학사”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학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76-2번지에 둔다.

제3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기타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제4조(운영위탁) 학사 운영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운영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제5조(운영지원) 도지사는 학사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운영법인의 책무) ① 운영법인은 입사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법인은 지원받은 금전 및 공유재산을 학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운영법인은 위탁운영 기간중 학사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운영법인은 이 조례 및 학사관련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운영법인이 제2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승인 등) 운영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학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지사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3. 학사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4.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8조(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사의 운영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운영법인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운영법인은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운영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운영법인 이사장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 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학사운영에 관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천현 전문위원 정천현입니다.